

● 제30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203)

2022. 6. 1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3203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출 일 : 2022. 5. 25.
- 다. 회 부 일 : 2022. 5.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제21조의 4 및 제28조의4에 따라 위임된 성과계약과 정책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 제정: '21.9.24, 시행: '22.3.25.

나.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 변경(안 제3조)
- 사회서비스원 사업범위 변경(안 제4조)
- 이사장·대표이사 명칭을 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변경 (안 제8조)
-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요건 변경(안 제17조제3항)
-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라 함) 제정(21. 9. 24)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임원임기,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요건을 변경하는 한편 성과계약과 정책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사항 검토

□ 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안 제3조)

- 안 제3조는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1)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 및 내용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 1)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안 제4조)

- 본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²⁾에 따른 사업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 및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사업은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명문화하는 것임. 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서비스원의 책무(안 제6조)

- 본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책무로써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 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을 통해

2)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서비스원 임원의 임기(안 제8조)

- 안 제8조는 사회서비스원법 제17조³⁾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원장은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성과계약(안 제8조, 안 제19조 신설)

- 안 제18조는 사회서비스원법 제21조⁴⁾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임원의 성과계약의 성립, 성과계약서의 체결 내용, 성과계약서

3)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연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1조(성과계약) ① 시·도지사나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내용 변경 사유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안 제19조는 사회서비스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에 대한 것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다음연도 원장 보수 책정 시 성과계약서 상의 계약내용 달성 정도, 사회서비스원법 제34조5)에 따른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0조 ~ 제25조 신설)

- 안 제20조, 제21조, 제25조는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6)에 따라

5)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와는 별도로 매년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영평가등에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 여부와 제37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제28조(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시·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등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 유형 등의 적정성 및 사업 수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2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함)」 제7조7)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바 ‘정책심의위원회’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제척사항 등의 추가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공정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3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조례」 제8조의28)에 따라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임.

③ 시·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시·도 및 시·도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시·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7. <생략>

8)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2021. 9. 24. 제정되어 2022. 3. 25. 시행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중복 사항을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내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